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08. 4.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인 [별표2]를 현행 조례안의 [별표2]로 수정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이 시설물마다 차이가 있는데, 개정안 [별표2]는 다소 완화된 설치기준을 반영하고 있어 현행대로 설치 기준을 사용토록 수정하였음

2. 수정 주요내용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설치기준을 현행대로 사용토록 함

3. 참고사항

- 현행 [별표2](제14조 관련)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를 (현행대로 하기위하여)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별표 2</u>	<u>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u>	<u>(현행과 같음)</u>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1회 2시간 무료, 2시간 후 50퍼센트 감면(증명서제시)

제4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 면제(증명서제시)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공영주차장(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의 경우 경차전용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경차전용주차구획에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형자동차 이외 차량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조

제1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시장은 기존 주택 내에 내 집안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 안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보조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로 개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며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단,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다.

1. 담장철거 후 직각주차구획 설치
2. 담장철거 후 평행주차구획 설치
3. 대문철거 후 주차장 설치
4. 이웃간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제21조(보조금액)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주차면 1면당 최고 15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으며, 유형별 보조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주차구획을 설치한 경우 : 120만원 이하
2.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주차구획을 설치한 경우 : 130만원 이하
3. 대문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 150만원 이하
4. 이웃간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 세대당 130만원
5. 기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대수당 최고 50만원 추가지원

제22조(주차장 설치의 신청)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설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치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후 보조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방법) ① 신청자가 공사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설치

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주차시설관리) 시장은 보조금으로 설치된 주차시설을 년2회(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주차시설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한다.

제25조(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주차장용도를 변경한 때
3. 법·영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내 집안 주차시설 설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차장 현황	주차장의 위치			
	주차장의 형태			
	공사기간		규모	m ² , 대
	완료(예정일자)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내 집안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 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차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 2. 주차시설 예정지 현황사진 1매 3.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각 1통				

【별지 제9호서식】

내 집안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설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차장 현황	주차장위치			
	주차장형태		규모	m ² , 대
	설치신청일		설치완료일	
	공사금액		보조금액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내 집안
주차시설을 설치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②

구미시장 귀하

첨부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 중, 후) 각 3매

【별지 제10호서식】

보 조 금 지 급 청 구 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사금액		보조금액	
	은행계좌번호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내 집안
주차시설의 설치보조금을 청구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구 미 시 장 귀하

내 집안 주차시설 관리카드

(앞면)

설 치 일		규 모		
위 치				
설 치 자		전화번호		
주 차 형 태	직각주차(), 평행주차(), 이웃간공동주차(), 기타()			
설 치 형 태	담장철거(), 대문개조(), 이웃간담장철거(), 기타()			
공 사 금 액		보조금액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일 시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특 기 사 항

(뒷면)

	조 사 일 시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특 기 사 항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주 차 장 전 경 사 진				